

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일		처리기간	
						40일 이내 (단독주택 20일 이내)	
① 신청인	업체명(대표자명)	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						
	실 책 임 자	성 명 전화번호		F A X 전자우편			
② 건축주	성명(법인명)	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)			
	주 소 (전화번호:)						
③ 설계자	사무소명			신고번호			
	성 명			자격번호			
	사무소 주소 (전화번호:)						
④ 신청 건축물	건축물명			인증대상 건축물군			
	소재지 주소						
	건축물 용도		대지면적		건축면적		연면적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제16조제4항 및 「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.

150

신청인(또는 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신청서 접수기관

(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)

인증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.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		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**접수** → **검토** → **결재** → **인증서 발급**

신청인 인증기관